

영등포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6. 3.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0호로 2016년 2월 16일 이용주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가. 흡연은 중독 가능성이 높고, 폐암,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나. 특히, 임산부, 청소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 도림천의 보행자길에서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영등포구 관내 하천(안양천,도림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5조제1항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도시공원 35개소를 비롯한 1,047개소¹⁾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됨.

1)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영등포구 보건지원과 자료, 2016.2월말 기준)

계(개소)	공원	버스 정류장	마을 마당	학교절대 정화구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건물경계선 10m이내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거리
1,047	35	504	31	43	300	38	92	4

○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2014.4.11.부터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전체 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조례에서 특정 장소(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이미 시행중인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안양천 및 도림천 보행자길이 도시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라 「하천법」 적용을 받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바, 하천변 보행 산책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 개선에 기여할 것임.

참 고 자 료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